

HOME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연금사업 시행

윤대열기자 | 승인 2026.08.12

소유 농지 담보로 매월 연금 지급...경작·임대 통한 추가 소득도 가능
만 60세 이상·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 대상...배우자 연금 승계도 가능



한국농어촌공사 문경지사 농지연금 포스터.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소유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농지연금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농업인은 일반 근로자에 비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거나 일정한 월 소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노후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농지연금은 이 같은 농업인의 노후 소득 불안을 덜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농지연금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을 재원으로 운영된다.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면 매월 생활안정자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연금을 받으면서도 담보로 제공한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해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배우자에 대한 연금 승계도 가능하다.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한 배우자가 연금을 승계해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어 부부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한다.

가입 대상은 만 60세 이상이면서 영농경력 5년 이상인 농업인이다.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면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어야 한다. 사업대상자는 해당 농지를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는 사업대상자의 주소지가 담보농지가 소재한 시·군·구에 있거나 담보농지와 주소지 간 직선거리가 30km 이내여야 한다.

농지연금 가입 및 세부 지원 조건은 한국농어촌공사 지역 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병탁 한국농어촌공사 문경지사장은 "농지연금은 평생 농업에 헌신해 온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노후를 선물하는 효자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걱정 없이 안정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맞춤형 안내와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대열기자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